붙임1 **국민참여위원회 소개자료**

□ 국민참여위원회 개요

○ (법적근거) 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 제16조, 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 제17조, 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

○ (성격·기능) **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**로, **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**(교육발전계획 수립, 국가교육과정, 의견수렴·조정)를 추진하는 경우에 **국민 의견수렴 관련 자문 수행**

○ (위원구성) 위원장을 포함하여 **500명으로 구성**

-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**500명 중 360명 내외**(약 75%)**는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, 나머지 인원**(약 25%)**은 시·도교육감 및 시·도지사로부터 추천***

*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, 교육감은 교육 분야 위원을 추천하고 시·도지사는 산업·문화·과기·복지 등 교육을 제외한 분야 위원을 추천

○ (위원선정) 심사위원회를 통해 **지역별, 연령별, 성별, 직능별**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**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**

□ 국민참여위원 개요

○ (자격) **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**으로,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**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**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**의견 제시와 온·오프라인 활동이 가능**한 사람

○ (임기) 2년

○ (활동) 정기회의는 **연 2회 개최**하고, **필요 시 수시 개최** 추진

※ 전체 회의, 권역별 회의, 온라인 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위 운영

※ 교육정책·현안 관련 교육자료 제공, 국민참여위원 커뮤니티 운영, 소정의 기념품 제공 등의 활동 지원 예정

○ (제한)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·선거활동 금지, 위원 지위를 이용한 영리 및 사적 이익 추구 금지